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24-126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9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‘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’를 설치·운영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윈드오케스트라 구성 및 운영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지휘자 및 단원의 자격 및 위·해촉(안 제5조~제8조)
- 라. 수탁자 의무 및 지도·감독 등(안 제9조~제12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24. 8. 29. ~ 9. 18. (제출된 의견 없음)
 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 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 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반영

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의견	조례안 제2조와 관련하여,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때 '문화취약계층'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함.
반영	제2조(기능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원드오케스트라(이하 “오케스트라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3.(생략) ② 구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케스트라의 활동이 관내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참고사항	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5조의3(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복지 증진 시책 강구) <u>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</u>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<u>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(이하 “오케스트라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·보급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
2.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정서 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에 기여
3.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 참여로 구민 화합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위상 제고

② 구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케스트라의 활동이 관내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오케스트라는 단장, 지휘자,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오케스트라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구청장(이하 “부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된다.

③ 오케스트라의 정원은 50인 이내로 한다.

④ 오케스트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오케스트라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오케스트라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단장이 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, 오케스트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및 관련 규칙을 따른다.

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단장의 직무) 단장은 오케스트라의 사무를 총괄하고, 지휘자 및 단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6조(자격 및 모집) 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,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음악 및 악기에 재능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② 지휘자 및 단원의 모집과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위촉) ① 지휘자 및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② 지휘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내부 심사를 거쳐 두 차례만 연임

할 수 있다.

③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촉기간 만료 시 내부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.

제8조(해촉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휘자 및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 거부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
3. 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오케스트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
4. 그 밖에 오케스트라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오케스트라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,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등을 오케스트라의 관리·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운용계획을 포함한 오케스트라의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·제출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.

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, 매년 그 실적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산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필요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오케스트라 관리·운영 규정을 제정·시행할 수 있으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제출, 실적 및 결과 보고 등과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구청장의 지도·감독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위탁의 취소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2. 수탁자가 제10조에 의한 구청장의 지도·감독에 따르지 않은 경우
3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4.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12조(경비의 지원) 지휘자 및 단원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안 제4조(운영)

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- 조례안 제12조(경비의 지원)

지휘자 및 단원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정임영
연 락 처	02-3153-8352